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 산업복지측면에서-

윤조덕 : 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타 소장

I. 산재보험 적용 확대의 의의

윤조덕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1. 적용확대의 배경 및 필요성

- 산재보험은 1963년에 법을 제정하여 196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시행초기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하여 현재는 금융보험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에 적용되고 있음(표 1 참조).
- 그간 보험재정여건, 사업주의 부담능력, 행정적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 재해 위험이 높고 보상능력에 있어서 취약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학계와 노동계에서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이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하였음.
- 이에 따라 1997. 11. 16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4인 이하 사업에 대하여 재해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 사회보장발전계획('98. 11. 23 국무회의에서 의결)에서도 2001년 1월부터 적용을 확대하기로 정책을 세우고 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을 2000. 7. 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보험 적용을 조기에 확대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함

※ 타 사회보험의 경우

- 고용보험은 1998. 10. 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국민연금은 1999. 4. 1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가입
- 의료보험은 지역 피보험자로 가입

<표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추이

연도	사업장 규모	적용 업종의 확대
1964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1965	200인 이상	전기ガ스업, 운수보관업
1966	150인 이상	
1967	100인 이상	
1968	50인 이상	
1969		건설업, 수도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
1972	30인 이상	
1973	16인 이상	
1976	5인 이상(단, 광업, 화학, 석탄, 석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0인 이상	
1982		별목업
1983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1986	5인 이상	
1991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1996		교육서비스업
1998		금융보험업, 해외파견업

I. 산재보험 적용 확대의 의의

윤조덕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1. 적용확대의 배경 및 필요성

- 산재보험은 1963년에 법을 제정하여 196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시행초기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하여 현재는 금융보험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에 적용되고 있음(표 1 참조).
- 그간 보험재정여건, 사업주의 부담능력, 행정적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 재해 위험이 높고 보상능력에 있어서 취약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학계와 노동계에서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이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하였음.
- 이에 따라 1997. 11. 16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4인 이하 사업에 대하여 재해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 사회보장발전계획('98. 11. 23 국무회의에서 의결)에서도 2001년 1월부터 적용을 확대하기로 정책을 세우고 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을 확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을 2000. 7. 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보험 적용을 조기에 확대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함

※ 타 사회보험의 경우

- 고용보험은 1998. 10. 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국민연금은 1999. 4. 1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가입
- 의료보험은 지역 피보험자로 가입

<표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추이

연도	사업장 규모	적용 업종의 확대
1964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1965	200인 이상	전기ガ스업, 운수보관업
1966	150인 이상	
1967	100인 이상	
1968	50인 이상	
1969		건설업, 수도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
1972	30인 이상	
1973	16인 이상	
1976	5인 이상(단, 광업, 화학, 석탄, 석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0인 이상	
1982		벌목업
1983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1986	5인 이상	
1991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1996		교육서비스업
1998		금융보험업, 해외파견업

2. 적용확대의 의의

-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약 165만명이 산재보험 보상대상에 편입되어 업무상 재해발생시에도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도 연간 약 3천억원에 이르는 보상비용을 소정의 보험료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폐업을 방지하고 경영활동의 계속성이 보장됨

II. 4인 이하 사업장 및 중소기업주의 실태

1. 4인 이하 사업장 및 근로자수 추계

- 통계청의 「1997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12월 말 현재 4인 이하 영세 사업체 수는 246만 1,751개로서 전체 사업체(285만 3,673개)의 약 86.3%에 해당하고, 4인 이하 사업체 종사자는 총 438만 3,775명으로 전체 종사자(1,347만 343명)의 30.4%에 해당함.
- 이 중 농·임·어업을 제외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용 및 임시·일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재보험 4인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시 증가하는 대상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 사업장은 88만개소 그리고 근로자는 164만 7천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현재 적용대상 사업장의 373% 증가, 적용근로자의 22% 증가에 해당함(표 2 참조).

- 산재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총 취업자(2,055만 8천명)의 36.5%에서 44.5%로, 임금근로자(1,260만 3천명)의 59.5%에서 72.6%로 증가할 것임.

<표 2> 4인 이하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사 업 장		근 로 자	
	사업장수	점유율	근로자수	점유율
계	880,055	100.0	1,646,502	100.0
광업	760	0.1	1,568	0.1
제조업	114,463	13	252,905	15.4
전기 가스 수도업	468	0.1	1,315	0.1
건설업	27,192	3.1	62,161	3.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6,562	1.9	36,213	2.2
도소매 및 음식업	469,288	53.3	822,741	49.9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48,617	5.5	105,548	6.4
교육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02,705	23	364,051	22.1

※ 자료 : 통계청, '97 사업체 현황자료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 제외업종 : 농·임·어업(898개 사업장, 2,229명 근로자)

2.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특성

-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서류가 없음.
-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반수 이상이 임금지급에 관한 근거서류가 미비한 상태임(표 3참조).

<표 3> 임금지급 근거서류 유무

단위: 명, (%)

규모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4인 이하	154 (33.0)	313 (67.0)	41 (19.3)	171 (80.1)	51 (22.9)	172 (77.1)
5~29인	268 (84.5)	49 (15.5)	123 (74.6)	42 (25.5)	111 (69.8)	48 (30.2)
30인 이상	134 (97.1)	4 (2.9)	82 (92.1)	7 (7.9)	44 (77.2)	13 (22.8)
계	556 (60.3)	366 (39.7)	246 (52.8)	220 (47.2)	206 (46.9)	233 (53.1)
	$\chi^2=301.547, p=0.001$		$\chi^2=181.798, p=0.001$		$\chi^2=106.218, p=0.001$	

출처 : 허재준, 황덕순, 『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 및 실태조사보고』, 1998, p. 57.

* 사업장 대상 조사임

- 4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임금지급 근거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사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의 이동이 많음을 고려할 때, 4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서 종사자의 균속연수가 현저히 짧음(표 4 참조).
-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이 갖는 경영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거의 대부분이 개인 경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자산규모가 매우 낮으며, 생산활동의 규모 또한 작음.
-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은 규모의 영세성 및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중·대규모사업장에 비해서 재해 발생률이 높음(표 5 참조).

<표 4>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근속연수

(단위: 년)

	10인 이상	5-9인	1-4인
전산업	5.6	3.8	2.7
광업	6.6	4.0	2.8
제조업	5.5	3.7	3.3
전기ガ스업	11.7	5.4	8.2
건설업	4.4	2.6	2.4
도소매업	4.6	4.0	2.8
숙박음식업	4.1	2.0	1.3
운수창고업	5.8	5.6	3.6
금융보험업	7.9	6.2	5.0
부동산임대업	4.0	3.3	3.5
교육서비스업	10.9	3.1	2.0
보건서비스업	4.4	3.6	2.8
기타서비스업	6.0	4.2	3.7

출처: 노동부, 『영 세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1998.

<표 5>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1998)

규모	총계	10인 미만	10~50인	50~99인	100~199 인	200~299 인	300~499 인	500~999 인	1000인 이상
재해자수 (재해율)	51,514 (0.68)	10,518 (1.69)	19,236 (0.93)	6,199 (0.68)	5,670 (0.59)	2,662 (0.51)	2,046 (0.39)	2,067 (0.36)	3,116 (0.22)

출처: 노동부, 『98 산업재해분석』

3. 중소기업체 수 및 중소기업체의 특성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필수적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전체 사업체의 99.1%, 전체 종업원수 중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되어온 결과임(표 6 참조).

- 중소기업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업종 성격상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주 스스로가 주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작업중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비슷함.

<표 6> 중소기업체수 및 종업원수(1997년)

(단위 : 개, 명, %)

	전체		전체		전체	
	사업체수	종업원수	사업체수	종업원수	사업체수	종업원수
합계	2,697,096 (2,657,208)	11,100,491 (11,566,587)	2,672,983 (2,632,561)	8,260,062 (8,454,200)	99.1 (99.1)	74.4 (73.1)
제조업	305,847 (313,656)	3,312,103 (3,753,879)	304,861 (312,523)	2,372,123 (2,608,802)	99.7 (99.6)	71.6 (69.5)
도·소매업 및 기타서비스업	2,132,330 (2,087,128)	6,234,438 (6,143,706)	2,109,802 (2,064,270)	4,768,825 (4,709,939)	98.9 (98.9)	76.5 (76.7)
운송업	186,980 (184,159)	534,269 (562,965)	186,869 (184,027)	474,443 (482,179)	99.9 (99.9)	88.8 (85.6)
건설업	69,290 (66,417)	981,783 (1,060,923)	68,893 (68,983)	620,595 (627,143)	99.4 (99.4)	63.2 (59.1)
광업	2,344 (2,587)	29,660 (35,628)	2,337 (2,576)	22,288 (24,635)	99.7 (99.6)	75.1 (69.1)
전기·가스업	307 (261)	8,238 (9,486)	221 (182)	1,788 (1,502)	72.0 (69.7)	21.7 (15.8)

주 : 1) 전산업 중에서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농업, 수렵업 및 임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기관, 사회복지사업, 회원단체 등을 제외하고 작성된 통계임

2) ()안은 1996. 12. 31. 현재

자료 : 통계청, 「'97년 산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8. 12.

- 국민연금의 기업주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수급추이를 볼 때 1989년 신규로 발생한 유족급여 수급율은 0.02%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하여 1998년에는 0.12%를 나타내고 있음(표 7 참조).

<표 7> 국민연금의 기업주 유족급여 수급추이

(단위 : 개소, 명, %, 원)

구분	전체기업주수	수급기업주수	유족연금수급율(%)	월연금합계액	평균월연금액
1988	58,583				
1989	62,952	14	0.02	2,323,250	165,946
1990	72,511	14	0.02	2,302,500	164,464
1991	80,987	30	0.04	5,980,490	199,349
1992	120,374	38	0.03	6,745,490	177,512
1993	129,703	71	0.05	13,448,570	189,416
1994	144,910	85	0.06	16,873,760	198,514
1995	152,463	131	0.08	25,307,150	193,184
1996	164,205	150	0.09	29,499,480	196,663
1997	172,759	159	0.09	32,798,390	206,279
1998	160,027	198	0.12	45,399,020	229,287
1999	183,126	145	0.08	31,347,760	216,191
총계(평균)	131,274	94	0.07	212,025,860	204,855

주 : 단, '99년 자료는 10월까지의 자료임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1999.

-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기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위험, 특히 업무상 재해와 과로사 등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III.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

- 적용확대 측면에서 -

- 1999년 12월 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을 4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임의가입 등이 신설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산업복지가 제도화됨.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시행령(안) 제3조 제1항)

시행령(안)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공사 중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인 661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농업·임업(별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5. 가사서비스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은 사업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경제의 영세성으로 인해 폐업·도산 등의 확률이 높으며, 대부분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징수·보상 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하여
 -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5인 미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적용하게 됨(법 제4조의2,령(안) 제2조의2)

법 제4조의2 【기준임금】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 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노동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간·일·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령(안) 제2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5조의4,령(안) 제113조의3, 규칙(안) 제90조의4~7)

법 제105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로 본다. (②③④⑤⑥생략)

령(안) 제113조의3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법 제10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라 함은 상시 5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규칙(안) 제90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의 판단기준】 영 제113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상시 5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 함은 보험가입 신청일 이전 30일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그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 50인 이하가 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동안 사용한 연 인원을 그 가동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규칙(안) 제90조의5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105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당해 보험연도분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보험가입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여부, 가입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결과 이미 질병에 걸려 그 증상 또는 장해의 정도가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중·소기업 사업주의 건강진단 항목, 내용, 실시기관과 건강진단 결과 등을 고려한 보험가입 승인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 결정을 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납부된 보험료를 자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자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규칙(안) 제90조의6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된 보험연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법 제105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보험요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일수(제9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나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보험료의 충당·반환 및 연체금 징수에 대하여는 각각 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안) 제90조의7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재해인정 범위 등】 ① 법 제105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도중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사업장내에서 특례가입신청서상의 소정 근로시간 중에 특례가입대상업무를 위한 행위 및 이와 직접 연관된 행위로서 제34조 제1항 각호의 1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행하는 사업주 본래 업무를 위한 행위는 제외
2. 사업장내에서 근로시간외에 제1호에 의한 업무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행하는 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행위
3.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취업시간에 연계되어 행하여

지는 준비, 정리업무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근로시간 내 사업장 시설을 이용중이거나 시설내에서 행동 중인 행위

5. 해당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출장행위. 다만, 출장의 자의적 행위 · 적극적 사적행위 또는 범죄행위 등은 제외

6. 해당 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와 함께 참석하는 행위

② 제32조(제3호 단서규정 제외) · 제33조 ·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IV. 4인 이하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

1. 4인 이하 사업장 안전보건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의 필요성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적용대상 사업장의 재해발생율, 사망재해율, 직업병 발생율의 급격한 증가 예상.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작업환경관리와 근로자 건강관리가 열악한 실정임.
 - 특히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고 산업안전보건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문제가 은폐되거나 방치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보건조직 관련 제도들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제도는 전무한 상태임.
- 4인 이하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보건실태로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이 보상해야 할 산업재해·직업병으로 인해 산재보험재정의 적자 운영이 예상됨.

<표 8> 4인 이하 사업장 산재보험수지 추계 (단위 : 억원)

적용 정수율	산재보험료(수입) (A)	산재보험급여(지출) (B)	보험수지 (B-A)
100%	2,151	3,022	△ 871
63% ¹⁾	1,355	3,022	△1,667
46% ²⁾	989	3,022	△2,033
33% ³⁾	710	3,022	△2,312
23% ⁴⁾	495	3,022	△2,527

-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7 평균수납률 63% 적용
- 2) 일본의 경우 4인 이하 업체의 산재보험 가입율 46% 적용
- 3)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정수율 33% 적용
- 4) '98 고용보험 적용확대시 예상적용율 23% 적용

자료 : 노동부(산재보험과)내부자료

- 산재보험료의 적극적인 징수 등 행정 및 제도의 완비에 앞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 사업을 통해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재정 손실을 줄여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2.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사업 현황

- 산재예방특별사업(1995년-1997년)
 - 영세기업 산업안전설비 개선지원
 - 산재·직업병 발생율 높은 특수업종의 안전투자지원
 - 산업안전보건체계 선진화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1997년-1999년)
 -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 집중지원
 - 중소·영세사업장 무료 기술상담·지도
 -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확대
 - 재해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 안전보건기술자료 제공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0년-2004년)
 -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및 자금지원제도 개선
 -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확대
 -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지원 강화
 - 제조업의 하도급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 현행 영세소규모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원 사항
 - 사업 내용 : 산업안전 취약부문 중점지원,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 프레스 재해예방 강화, 위험설비 안전센터 운영(위험관리기술지원)
 - 지난 3년간 산업안전공단 예산 중 융자금을 제외하고 약20% 정도가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됨.

<표 9> 산업안전공단 예산 중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1996년	1997년	1998년
총 예산	2,226억원	2,278억원	964억원
영세사업장 지원사업 예산*	326.56억원	335.7억원	204.15억원
비율	14.7%	14.7%	21.2%

* 각종 융자금은 제외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종합심사분석보고서」 각년도

3. 4인 이하 사업장 안전보건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 일본의 ‘노재지정단체제도’
 - 노동재해방지를 통한 노재보험 수지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재해예방이라는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재보험 재정 안정화의 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독일의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교육
 - 독일에서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주 모델(Unternehmermodell)’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 개발이 시급함

VII. 결론

- 2000년 7월부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되면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오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보건이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들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지난 10년간(1988~1997)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의하여 산업 재해 발생은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재해자 중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와 신체 장해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산재보험이 4인 이하까지 적용 확대 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외국 선진국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산재보험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의 체계화를 통한 산재·직업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재예방특별사업계획(노동부내부자료)」. 1994. 5.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1998연도」. 1999.
- 노동부. 「일본 신 노재보험재정구조와 이론」(번역서). 산재보험정책자료 91-2. 1991.
- 노동부.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2000. 1.
- 노문사. 「2000년 신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0.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회보험관리운영제도 개선방향('97 제4차 공개토론회 자료)」. 1997. 9. 2.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산재보험운영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제21차 전체회의 의결)」. 1997. 11. 6.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참고자료(제19차 전체회의). 1997. 9. 9.
-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1996. 8
-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안)」. 1999. 7
- 윤조덕 외. 「산재예방특별사업 수행효과 등에 관한 연구」(한국산업안전공단 수탁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1996.
- 윤조덕,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사업 및 정책연구 방향」, 한국산업안전공단 워크샵, 1999. 10. 6
- 윤조덕, 이정우 외. 「산재보험적용 및 징수체계의 효율화 방안(I)」. 한국노동연구원. 1998. 12.
- 윤조덕. 「산업안전선진화에 관한 기초연구-산재예방특별사업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노동연구원. 1996. 12.
- 이영선. 「현행 고용보험사무조합제도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한국노동연구원 내부세미나 자료)」. 1999. 11. 18

- 통계청. 「'97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998. 12.
- 한국노동연구원, 「4인이하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1999. 12
- 한국노동연구원, 「산재예방특별사업 시행효과분석 등에 관한 연구」, 1996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재예방특별자금지원사업 설문조사분석결과」, 1995
-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계획추진 지침」. 각년도
- 한국산업안전공단, 「종합심사분석보고서」. 각년도
- 허재준, 황덕순, 「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 및 실태조사보고」. 한국노동연구원. 1998.